



마을공방(공동작업장)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약정서

서울특별시 성동구(이하 “성동구”라고 한다)와 한양여자대학교(이하 “한양여대”라고 한다) 및 한국패션사회적협동조합(이하 “한국패션사협”이라고 한다)은 2015년 행정자치부 마을공방 육성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마을공방(공동작업장)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약정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이 약정서는 취약계층의 의류패션 기술습득을 지원하고, 일자리 창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방을 건립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사회적경제 활동 지원) 성동구와 한양여대, 한국패션사협(이하 “각기관”이라고 한다)은 마을공방을 운영함에 있어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동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, 의류패션 일반협동조합의 자립에 필요한 경제 활동을 적극 후원한다.

제3조 (마을공방 건립) ① 마을공방 건립부지는 한양여대에서 한양여대 내 부지(성동구 사근동 149번지 내 부지 일부)를 무상으로 임대하고, 성동구는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등 행정지원을 하며, 한국패션사협은 마을공방 내부 시설 배치 등 공간 활용 방안을 지원한다.

② 마을공방 사업비는 성동구 예산 162,500,000원에 한양여대에서 50,000,000원을 보조한 총 212,500,000원으로 한다.

③ 마을공방은 가설건축물로 건립하되 건립 규모와 시설 등에 관하여는 성동구와 한양여대, 한국패션사협이 협의하여 결정한다

제4조 (사업비 집행) ① 마을공방 사업비는 한양여대 산학협력단에서 집행하며, 성동구는 구 예산 162,500,000원을 한양여대 산학협력단에 전액 교부 한다.

② 한양여대 산학협력단은 사업비를 교부조건 및 관계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.

제5조 (소유권 등) ① 마을공방의 가설건축물은 성동구와 한양여대가 공동소유로 하고, 비품은 성동구와 한양여대, 한국패션사협이 공동소유로 하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인은 성동구로 한다.

② 임대기간 만료 및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가설건축물과 비품 등을 처분 할 경우는 각 기관의 협의 아래 처분하며, 아울러 처분에 따른 수익이 발생 할 경우 투자비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분한다.

제6조 (부지 사용) ① 한양여대의 부지 무상 임대기간은 이 약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이 약정 만료일까지로 한다.

② 한양여대는 무상 임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임대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서면 통보가 없을 경우 무상 임대 기간의 효력은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.

제7조 (운영협의체 구성 등) 마을공방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각 기관 대표와 이용자 대표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운영협의체를 구성하되, 운영 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칙은 마을공방 운영 이전까지 각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8조 (시설관리 및 운영) 마을공방 총괄 및 행정지원은 성동구에서, 마을공방 시설은 한양여대에서 관리하고, 마을공방 일감 수주 및 기술 지원 등 운영은 한국패션사협에서 하되, 세부사항은 운영협의체 및 운영규칙에 따른다.

제9조 (효력 발생 등) 이 약정은 각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, 약정 만료일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 통보가 없을 경우 효력이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.

제10조 (준용)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.

위 업무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년 8월 일

서울특별시 성동구
구청장 정 원 오

한양여자대학교
총장 노 덕 주

한국패션사회적협동조합
이사장 신 만 수